

정보 ([]공개 [v]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강성준 (우 100-809,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2가)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

접수번호	2775542	접수일자	2014.11.27
청구 내용	[정보공개청구] 2014년 11월 6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김정도씨(수용번호 []번) 폭행 사건 관련, 1) 서울구치소장의 사과문(인터넷 게시본, 소 내부 게시본, 접견대기실 게시본) 2) 수용자들에게 방송한 소 내부 방송의 일시 및 내용 3) 당사자가 제출한 보고문(보고전) 일체 4) 사건 인지 이후 상급 기관에 보낸 보고서 일체 5)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의 일시 및 내용, 배포한 자료 ※참고: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의 별첨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자료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내용	2번사항 : 2014. 11. 10 11:00/ 16:30/ 17:00 3회방송 2014. 11. 14 17:00경 2회방송 방송내용 : 2014.11.6 발생한 사건과 관련 유감 표명과 추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수용자 여러분도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즉시 감독근무자에게 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 5번사항 2014.11.11 09:00 기관장의 교육을 비롯 해당과별 전수교육 실시 교육내용 :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시설 내에서 폭행사고 발생 시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		
공개 일시	2014.12.08 10 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전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 방법	① 수수료 0원	② 우송료 0원	③ 수수료 감면액 0원 계(①+②-③) 0원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1번사항, 4번사항: 해당사항은 현재 형사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염려있는 정보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 합니다. 또한 3번사항의 보고문은 부존재하는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014년 12월 08일

서울구치소장

기안자	직위(직급) 교사	서명 남상노	검토자	직위(직급) 교감	서명 박희호	결재권자	직위(직급) 교위공무원	서명 경의성
협조자	서기관	박희수						
시행	보안과-8632(2014.12.08)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